

#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(2020.1.1.~2024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·상담·치료·재활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
- (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
- (3) 「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5조
- (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다. 위탁사무

- (1)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

- (2) 중독관련 사업 계획 수립
- (3) 대상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
- (4) 사례관리(가정방문/내소상담/전화상담/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)
- (5) 중독자 및 가족 교육
- (6)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
- (7) 지역 내 중독관련 자문 등
- (8)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

#### 라. 시설현황

- (1) 시 설 명 :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(2) 설치장소 : 구미보건소 관할 구미시 동지역
  - ※ 현재 설치장소 : 구미시 검성로 115-2층, 현 수탁기관 소유 건물
- (3) 인력현황 : 7명(센터장1, 팀장1, 팀원5)

#### 마.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
※ 최초위탁 : 2006. 2.

#### 바. 소요예산 : 금344백만원(국167, 도53, 시124)

※ 2024년 기준

#### 사. 위탁조건

- (1) 2024년 보건복지부 「정신건강사업 안내」에 의한 운영기준 준수
- (2)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.
- (3) 수탁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재위탁 할 수 없음.
- (4) 현재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.

## 아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(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(2) 수탁기관 자격
  -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
  -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대학교
  -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- (3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(4)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자. 적정성 검토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
차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 3. 기대효과

- 가.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
- 나. 지역사회내에서 중독질환의 예방·치료, 중독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
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
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
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

제5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·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라 한다),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

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,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#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.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2024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.

나.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.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향후 5년간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른 비용은 총 1,824백만원으로 연평균 365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나.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을 3%로 반영함.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344	355	365	375	385	1,824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167	173	178	183	188	889
도비	53	54	55	56	58	276
시비	124	128	132	136	139	659
민간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
합계	344	355	365	375	385	1,824

5. 부대의견 : 없음.

6. 작성자 :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김민아(480-4168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4년 기준)

사 무 명	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		
사업비용	344,870천원		
사 업 비 세 부 내 역			
기 간	항 목	계 (천원)	산 출 기 초
2024	합 계	344,870	
	인 건 비 (기 본)	252,000	(기본급) 210,000,000원 (7명, 12개월) (퇴직적립금) 17,000,000원×1식 (4대보험부담금) 25,000,000원×1식
	인 건 비 (수 당)	23,840	(특수근무수당) 4,000,000×1식 (가족수당) 140,000원×1명×6월 (명절수당)(기본급60%*2회) 19,000,000원×1식
	여 비	3,600	(여비) 50,000원×6명×12월
	운 영 비	26,400	(운영비) 2,200,000원×12월 * 복사기, 정수기 등 임차, 사무용품구입, 비품구입, 무인경비, 근태용역, 공공요금 등
	사 업 비	39,030	홍보물 제작 15,000,000원×1식 프로그램 운영비 20,000,000원×1식 캠페인 운영비 4,030,000원×1식

소 관 부 서		건강증진과
입 안 자	과 장	이 정 숙
	팀 장	배 민 정
	담 당 자	김 민 아 (480-4168)